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2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박성민·정동만·박형수
구자근·조배숙·윤영석
유상범·엄태영·이종욱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3항).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심신미약·심신상실 또는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p> <p>· ② (생 략)</p> <p>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u>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 략)</p>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심신미약·심신상실</u> <u>또는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 -----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